

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7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0. 7. 4
- 다. 심사기간 : 2000. 7. 4 (1일간)

2.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사유

-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내고장 상품권 판매량 증가로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려는 것임.

3. 제안 설명요지

- 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(2000. 7. 4 제2차 본회의)

4. 예산편성 규모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비 고
계	118,067	117,767	300	증 0.3
일반회계	104,911	104,611	600	증 0.3
특별회계	13,156	13,156	0	0

나. 일반회계 세입 재원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지방세	세외 수입	지방 교부세	지방 양여금	국고 보조금	도비 보조금	비 고
104,911	9,716	14,397	44,297	13,497	15,835	7,169	

다. 세출의 주요내용

- 경제개발비
 - 내고장 상품권 판매대금 지급 300백만원

5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문찬주)

-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고장 상품권 판매량 증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이 편성됨.
-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검토해볼때 최소한의 예산 편성이사 사료됨.
- 향후 예산편성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운영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것임.

6. 질의 및 답변요지

"생략"

7. 위원회 활동

가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(2000. 7. 4)

-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
-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- '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- '99년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
 - 기획예산실, 총무과, 재무과, 민원봉사과, 문화관광과, 사회복지과, 환경과, 농산과, 산림과, 건설과, 도시경제과, 농업기술센타, 보건소
-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8. 심사요지

"생략"

9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